

산외면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토지출입,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산외면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출입, 보상계획,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정읍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산외면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나.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1개소(50m³/일), 하수관로 L=6.4km,
중계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125가구 등
- 다. 사업위치 : 산외면 종산리 일원
- 라. 사업기간 : 2026년~2028년
- 마.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가.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 나. 기간 : 2026. 6. 1. ~ 2026. 6. 15.(15일간)
- 다. 장소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전북 정읍시 충정로 237)
- 라. 내용 : 편입토지조서(열람장소 비치)

3. 출입할 토지 내역

- 가. 출입사유 : 측량,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등
- 나. 출입구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일원(붙임 조서)
*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고시.공고란 참조
- 다.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 시까지

4. 보상대상

- 가. 보상대상 : 산외면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일체
- 나.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 통지문, 정읍시청 홈페이지, 열람장소 비치

5. 보상 시기 및 보상 방법과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규정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라. 보상금 지급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실시)

- 토 지 :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정읍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

마.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방법 :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

다. 추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가능

7.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 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 ※ 사업계획 변경, 지적재조사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 사업인정 의견청취, 편입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본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소재 불명 및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소유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본 공고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합니다.
- 라. 열람 및 이의신청,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063-539-6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조서
2. 의견서
3. 이의신청서
4.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 끝.

[붙임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필지										
1	산외면 종산리	산285	임	31,835	65.68	현** 외 2인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				
2	산외면 종산리	534-1	구	155	87.84	국(농림수산부)					
3	산외면 종산리	534-7	구	503	100.44	국(농림부)					
4	산외면 종산리	663-5	천	596	187.82	국(국토교통부)					

[붙임 2]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제목 산외면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

202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산외면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
-----	--------------------------------------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202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 추천업체: 감정평가법인

○ 추천 일: 202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인장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